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30 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 안철수·강선영·박덕흠

최형두 · 인요한 · 박형수

유용원 • 주호영 • 김미애

서천호 • 고동진 • 한지아

이헌승 • 김성원 • 김종양

최수진 · 김장겸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외국 주요 입법례를 보면,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독성 있는 콘텐 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 체적 사안에 대하여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음.

이에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

고,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(이하 "정보추천 알고리즘"이라 함)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,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. 이 경우에도 자정부터 오전 6시 이전 사이의 시간대에 대하여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함에 있어서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, 제42조의4 신설 등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4. "사회관계망서비스"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하면서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화상·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15. "알고리즘"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·논리·규칙 및과정을 말한다.

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4(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) 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(이하 "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"라 한다)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(이하 "정보추천 알고리즘"이라 한다)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추천 알고리즘의 허용 여부를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친권자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 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정보추천 알고리즘의 허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연령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6조제3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의2. 제42조의4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청소년 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 한 자
 - 3의3. 제42조의4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청소년 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의4
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

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14. "사회관계망서비스"란 정보
	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
	이용자가 소통하면서 부호ㆍ
	문자・음성・음향・화상・동
	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
	있는 서비스를 말한다.
<u> <신 설></u>	<u>15. "알고리즘"이란 어떠한 문</u>
	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
	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
	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
	산·논리·규칙 및 과정을
	<u>말한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제42조의4(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
	<u>의 청소년 보호) ① 제42조의3</u>
	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
	임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
	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
	스를 제공하는 자(이하 "사회
	관계망서비스제공자"라 한다)

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(이하 "정보추천알고리즘"이라 한다)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추천 알고리 즉의 허용 여부를 위하여 이용 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관 계망서비스제공자는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있어 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정보추천 알고리 즘의 허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 ④ 제2항에 따른 연령 및 제3 항에 따른 동의를 확인하기 위 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76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4. ~ 25. (생략)

④ (생 략)

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3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제42조의4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 이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 비스 사용에 있어서 정보추 천 알고리즘을 허용한 자

3의3. 제42조의4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 이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 전 6시까지 정보추천 알고리 금을 허용한 자

4. ~ 25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